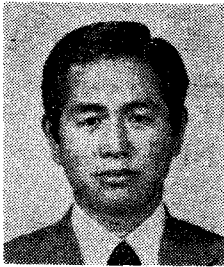


# 技術革新 時代의 國際通商과 知的 所有權 制度(1)



庾 麟 鳳

<國際特許研修院 教授部長>

## 目 次

- I. 世界經濟의 依存關係와 知的所有權의 重要性
  - 1. 知的所有權과 世界經濟의 依存關係
  - 2. 美國의 知的所有權 政策
  - 3. 發展途上國에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制度
  - 4. 先進國間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制度
  - 5. 知的所有權 制度에 關한 國際調整
- II. 技術革新 技術移轉時代에서의 知的所有權制度
  - 1. 基本方向
  - 2. 日本의 基本立場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 I. 世界經濟의 依存關係와

### 知的所有權의 重要性

#### 1. 知的所有權과 世界經濟의 依存關係

<通商政策으로서의 重要性이 높아지고 있는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的 調整>

○ 今日 交通 情報通信의 發展과 企業活動의 Globalization 要因은 各國經濟의 緊密度를 보다 깊게 하였고, 그 結果 世界市場은 소위 하나의 共同市場으로 統合되어 各國貿易依存度는 높아지고, 世界經濟의 相互依存關係는 현저히 深化擴大를 보이게 되었다.

○ 其中에도 戰後의 世界貿易은 GATT에 의한 關稅障壁의 輕減撤廢를 主로 한 自由貿易의 촉진을 主軸으로 貿易擴大와 各國經濟의 發展을 實現해 왔다.

○ GATT는 發展途上國에 對해서도 特惠關稅制度를 採用하는 등 發展途上國의 實情을 배려해서 世界經濟의 융합화를 추진해 왔다.

○ 現在까지 關稅에 對해서는 fig1에 보는 바와같이 Kennedy Round와 Tokyo Round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7回 開催된 多角的 貿易交涉으로 先進國의 關稅率은 1數字單位로 되었고, 이 以上 引下한다해서 從來에 比하여 貿易擴大를 促進할 效果가 거의 없게 되었다.

○ 이 때문에 今後 GATT에서의 交涉은 知的所有權制度和 通信·金融等의 Service分野의 事業規制等 新分野에 其 重要性이 증가되리라 본다.

특히 知的所有權에 關해서는 近年에 製品에서 占하는 Soft部分의 증대에 수반하여 知識과 技術의 國際移轉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知的生産物의 世界市場에서의 重要性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的 調整이 國際貿易의 원활한 發展을 促進함에 不可缺하게 되었다.

<fig 1> 各國關稅負擔率推移(對輸入 총액)

(位單: %)

國名	年度	1979	1980	1981	1982	1983
日 本		3.1	2.5	2.5	2.6	2.5
美 國		3.9	3.1	3.2	3.6	3.5
E C		3.1	2.6	2.5	2.7	2.7
Canada		4.6	4.5	4.5	4.3	4.2
Australia		9.5	9.5	9.0	9.3	9.7

(註) ① EC는 西獨, France, Italy, 네덜란드, 벨기에, Luxemburg, 英國, Denmark, 아일랜드에 대

한 數值임.

(註) ② EC의 負擔率은 農業課徵金을 포함한 數值임.

(資料) OECD "A統計" "Revenue Statistics" IMF "IFS"

(參考) 財政金融統計月報 413, 1986年 9月, 大藏省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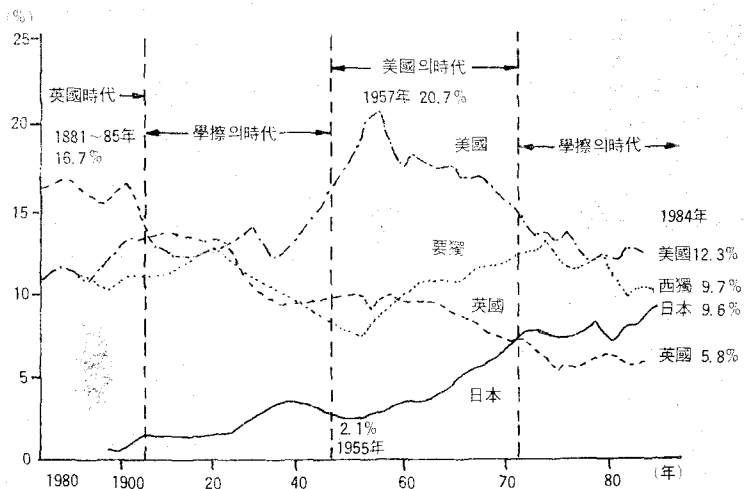
## 2. 美國의 知的所有權 政策

자) 知的所有權 保護強化의 背景

<국제경쟁력 저하로부터 탈피>

<fig 2>

主要先進國 輸出 占有率의 長期趨勢와 貿易摩擦



(參考) : 玉尾豐光 「地球大企業時代의 開幕」 通産省公報 1986年 1月 6日

<fig 3>

美國貿易, 國際收支, 國際投資位置

區分	1981	1982	1983	1984	1985
製造品輸入依存率	6.5	8.9	9.3	10.9	-
商品貿易收支	-280	-364	-671	1,125	1,244
Service 收支	417	362	300	182	217
經常收支	63	91	466	1,065	1,177
對外投資位置	1,407	1,362	885	44	1,074

單位 : 製造品輸入依存率-%, 其他 項目一億 \$

參考 : 美國商務省, 日經Business 1986年 9月 15日

이 때문에 美國은 國內産業은 外國製品의 流入으로부터 保護하고, 미국제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國內의으로는 獨占禁止政策의 緩和와 研究開發이나 設備投資로의 Incentive를 導出할 수 있는 稅制改革을 주

축으로 한 競爭力向上, 對外的으로는 相互主義에 입각한 公正한 通商關係의 Rule 構成을 重視하게 되었다 (fig 4).

<fig 4>

美國産業 活性化 方案

(80年代에 들어서의 主要 움직임)

<對外對策>

輸出

「相互主義에 입각한 公正貿易의 實現」 → 84年 通商法을 근거로 해서 Hightech, Service, 知的所有權 分野에서 主로 301條(通商上의 權利가 相對國의 不正한 制限과 差別로 침해된 경우 대통령은 관세인상등 적절한 처치를 取할 수 있다)에 의거해서, 2個國間교섭등 相對國의 市場개방 制度의 정비를 요구

「知的所有權의 국제적 Rule作成」 → 84年 通商法에서 相對國의 不公平貿易의 표증으로 知的所有權制度를 삽입.

關稅法 337條를 改正해서 美國企業이 特許證 침해에 對해서 미국측의 피해 立證이 없어도 ITC(美國國際貿易委員會)等에 提訴할 수 있도록 하는 法案提出中

新 Round 檢討項目에 다루어지도록 活動을 함(1986年 9月Uruguay의 GATT 各 國회의에서 결정)

輸入

「High tech 分野에서 技術流出防止」 → 85年의 輸出管理法修正으로, 軍事技術에 轉用할 수 있는 High-tech 製品의 High tech license는 國家安全保障의 關點에서 Cocom가 美 國에도 수출금지, 國防總省의 위탁연구를 받은 大學의 研究發表에 外國人 參加를 制限

<國內對策>

新發明 發見의 保護

「新기술-경제 환경에 적합한 지적소유 권제도 정비」 → Computer program과 반도체의 권리보호(80,84年) 의약, 의료가, 식품첨가물의 특허기간의 최대 5年間 回復(82年) 특허전문 聯邦抗訴裁判所를 設立해서 特許法의 統一性, 一元化를 도모(82年)

「稅制改正으로 投資에 대한 Incentive 向上」 → 86年稅制改正法으로, 法人所得의 所得稅率은 5단계(基本稅率 46% )부터 3단계(基本稅率 34%)됨, 企業의 減價償却은 3年·5年·10年·15年·19年의 5종류로 150% 定率이, 3年·5年·7年·10年은 200% 定率, 15年·20年은 150% 定率로, 不動產은 定額으로됨. 增加試驗研究費控除(과거 3年間의 平均 R and D를 넘는分에 對해서는 20%의 稅額控除를 認定)를 89年 4月까지 實施, 投資稅額控除의 廢止

研究開發 設備投資의 促進

「政府機關에 依한 研究開發 Support를 中心으로 한 High-tech 분야육성」 → 國防總省에 依한 VHSIC(超高速集積回路 80年~89年)과 MIMIC(Micro波, 毫米波, 集積回路: 86年~93年)의 開發. 이는 安全保障의 觀點에서도 重要

規制緩和에 依한 企業活動의 活性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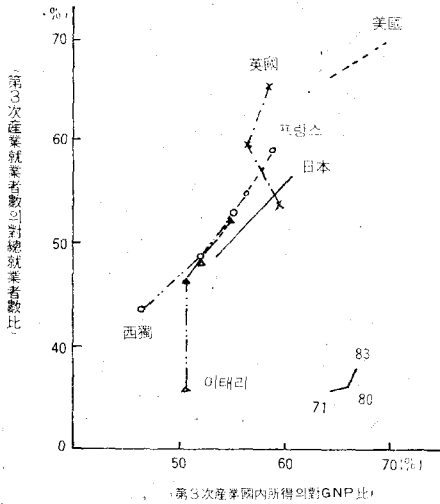
「獨禁法緩和에 依한 共同研究開發의 促進」 → 84年의 國家共同研究法의 制定으로 企業間에 共同開發의 길이 열림

「獨禁法緩和에 依한 競爭原理導入」 → GATT의 分割, IBM과 司法部의 화해(1982年) 預金金利의 完全自由 SC(1983年) 反 Trust法의 改正(1986年).

<國際競爭力強化에 있어서의 知的所有權 重視>  
美國은 經濟의 Soft化, Service化가 世界中 가장 進歩된 나라中의 하나이므로 해서, 經濟를 成長·發展시

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商品構成中 Service, Soft의 對價部分을 正當히 評價하는 知的所有權制度의 重要性이 높게 되었다(fig 5).

<fig 5> 主要國의 Service化



參考 : 通商白書 1986年度版

○ 특히 近年 技術優位를 확보하고 國際競爭力強化를 目標로 하고 있는 美國은 尖端分野와 Service部分을 成長, 發展시키기 위한 政策을 繼續 發表하고 있지만, 이들 中에도 知的所有權制度의 整備가 극히 重要視되고 있다. 또 美國의 Business는 世界中에서 가장 國際展開가 진보되어 있어서 國際의 相互依存關係의 進展속에서 去來를 行하고 있지만, 其他 많은 發展途上國에서는 知的所有權制度의 整備가 充分치 않기 때문에, Brand商品, Video, Soft, 출판물등의 不正商品이 대량 제조되어 流通되고, 그 傾向이 顕著해지고 있음으로 해서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의 Rule 作成을 重視하게 되었다.

나) 知的所有權政策의 動向等

<國內政策>

美國은 産業競爭力向上을 위해서 聯邦政府研究開發豫算의 增大, 研究開發促進을 위한 減稅企業共同開發에 對한 反 Trust法에 依한 規制適用緩和, 情報通信分野의 規制緩和, 尖端技術情報의 流失抑制 等 여러가지 政策을 펼치고 있다.

知的所有權關係로는 Computer program이 著作權法으로 保護되게 된 1980年 以來, Soft ware를 中心으로 著作權의 對象이 되는 著作物의 範圍가 넓혀지는 傾向이 있어 知的所有權의 對象範圍擴大와 보호수준의 強化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되었다.

▲ 對象範圍의 擴大

i) Know How保護를 위한 統一秘密 Cord作成

(1979年)

ii) 著作權法改正에 依한 Computer program의 著作法에 依한 保護(1980年)

iii) 半導體 Chip 保護法의 施行(1980年)

iv) 植物新品種, 微生物의 特許法에 依한 保護開始

v) 編集著作物로서의 Data Base의 保護等

▲ 保護水準의 強化

i) 附與된 特許를 다시한번 特許商標廳에서 고쳐 볼 수 있는 再審査制度의 導入을 骨子로 한 特許法改正(1980年)

ii) 諸特許權侵害訴訟의 裁判管轄權을 가지는 새로운 聯邦抗訴裁判所의 設立으로 特許法의 適用統一性 확보(1982年)

iii) 醫藥品과 食品添加物등 安全面의 審査手續이 必要한 技術分野의 特許期間을 최대 5年間연장(1984年)

또 近年 知的所有權을 保護하는 方法으로서 重視되어 온것이 Trade Secret 保護強化이다.

具體의 例를 들면 Trade Secret의 不正入手를 알 수 있는 立場에 있는 구입자에 對해서, 元 Trade Secret 所有者는 사용금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判例가 확립되었다.

○ 또 轉職者가 在職中에 習得한 Know How 等 Trade Secret를 轉職線에서 使用할을 一定期間禁止하는 訴訟이 자주 發生하고 있어 Trade Secret 企業에 속하는 것인지, 개인에 속하는지를 둘러싼 論爭이 열을 품고있다.

○ 이러한 움직임에 對해서 “美國에서는 지적소유권 전반에 걸쳐 그 強化를 推進하고 있지만 其中에서도 無方式主義의 著作權 Trade Secret에 依한 보호대상확대 현상이 顕著하다.

但 知的所有權의 適正한 保護水準에 對해서는 國民의 合意도 구할 수 없고 推定할 수도 없음에 注意해야 한다. (村上政博, 通商戰略의 新武器 知的所有權 Economist, 1987年 2月 17日)라는 指摘도 있음에, 今後도 其 動向에 注意를 기울여야 할 必要가 있다 말할 수 있다. <계속>

新 刊 案 內

C I P와 商標戰略

辨理士 金 延 洙 著

가 격 : 8,0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